

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구성) <신설>위원회는 <u>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2. 위원회 <불기 2555(2011).12.1 개정> 3. 기획위원회 <불기 2555(2011).12.1 개정> 4. 종교평화협력위원 <불기 2555(2011).12.1 본 호신설> 5. 사무국 	<p>제4조(구성 등)</p> <p>① <u>종교평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2. 위원회 <p><u>3.<삭제></u> <u>4.<삭제></u></p> <p>5. 사무국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<u>위원회는 종교간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회는 중대한 종교편향 사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④ <u>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⑤ <u>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,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</p>
<p>제6조(위원 및 위원회의)</p> <p>①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2. 총무원 사회부장 3. 포교원 포교부장 4.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5. 중앙신도회 회장 6. 포교사단장 7.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 	<p>제6조(위원 및 위원회의)</p> <p>① <u>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위원장 2. 총무원 사회부장 3. 포교원 포교부장 <p><u>4호~ 6호 <삭제></u></p> <p>7.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위원</p>
<p>제7조(기획위원회)</p> <p>① <u>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려 또는 재가전문가를 기획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기획위원의 총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총무원 사회팀장, 기획팀장, 포교원 포교차장을 당연직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으로 한다.</p> <p>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다음 각 호를 논의하고 기획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교평화 관련 연구·조사 및 정책 연구 2. 종교평화 제도개선 연구 3. 종교편향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. 종교편향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.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업 	
<p>제7조의2 (종교평화협력위원) ① 위원장은 종교 평화활동 및 종교차별(편향)에 대응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교평화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있는 승려 또는 재가자를 종교 평화협력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종교평화협력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종교평화 활동과 관련한 사항 2. 주요 종교차별(편향) 현안에 대한 사항 3. 종교평화 및 편향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 4. 기타 종교평화 관련된 사항 	<p><u><삭제></u></p>
<p>제9조(업무보고) 위원회는 월 1회 활동상황을 종무회의에 보고해야 하며, 주요 사안에 따라 수시로 종무회의에 보고토록 한다.</p>	<p>제9조(업무보고) 위원회는 <u>주요 사안이 있을 시 종무회의에 보고하여야</u> 한다.</p>
	<p>부칙<2024.00.00. 개정> <u>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